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62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redacted]유지재단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가. 원고는 [redacted]침례교 한국선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사업 등을 한다.

나. 원고는 [redacted]침례교 소속 선교사들 또는 그 가족이 국내 사택, 사무실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985. 9. 24.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제비동호, 제시동호, 제디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왔다. 그 후 [redacted]침례교에서 국내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해외에 파송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 해당 선교사 또는 그 가족의 숙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5. 7. 10., 2015. 9. 10.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원고가 과거 미국남침례교 소속 해외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한 것과 현재 한국기독교침례회 소속 해외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종교단체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원고는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미국남침례교 소속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 사무실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2010년 6월경부터 당초 취득한 목적과 달리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선교사 또는 그 가족의 숙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원고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에 대한 일시 숙소, 사무실의 제공이 원고의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선교사들의 숙소, 사무실로 사용되는 외에 원고의 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정한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판사 이광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별지

1. (2015.7.10.자 제1처분)

동(棟)	재산세(원)	도시지역분(원)	지역자원시설세(원)	지방교육세(원)
비(B)	2,390,080	1,167,280	9,700	478,010
씨(C)	2,393,450	1,168,450	9,710	478,690
디(D)	1,561,210	877,170	6,950	312,240

2. (2015.9.10.자 제2처분)

동(棟)	재산세(원)	도시지역분(원)	지역자원시설세(원)	지방교육세(원)
비(B)	2,390,080	1,167,280	9,700	478,010
씨(C)	2,393,450	1,168,450	9,710	478,690
디(D)	1,561,210	877,170	6,950	312,240